

무역상무학회지 제25권
2005년 2월 pp. 243~266

논문접수일 2005. 1.27
논문심사일 2005. 1.27
심사완료일 2005. 1.31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연구*

허재창** · 한낙현***

-
- I. 서론
 - II. 제조물책임 관련법규
 - III.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책임내용
 - IV. 제조물책임 사례연구
 - V. 결론
-

I.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1위에 달해 중국이 최대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고임금이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중국법인의 매출액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업자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중국법인이 제조·가공한 제품이 중국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는지 아닌지, 제조물책임을 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제조사 등은 언제까지 엄격책임을 지는 것인지 등등에 관한 제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 본 연구는 2004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제제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교수

***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전임강사

는 중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관련법규 및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인 민법통칙, 제품품질법 및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인 제품(또는 제조물), 결함의 정의, 책임주체와 원칙, 면책사유, 책임기간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제조물책임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제조물책임법제도의 운용의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수출업자나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중국법인이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제조물책임 관련법규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법규로는 크게 제조물책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률인 中華人民共和國 산품질량법(제품품질법: 이하에서는 제품품질법으로 한다)과 관련 법규인 中華人民共和國 민법총칙, 소비자권익보호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中華人民共和國 民法通則

중국에서는 민사기본법인 민법통칙이 1986년에 제정되었다. 이는 제9장 156조로 구성되어 公民(자연인), 법인 및 민사권리능력과 민사관계 · 민사활동 준칙 및 소유권, 채권, 저작권, 人身權 등의 민사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법에 해당되며 제조물책임에 대하여는 제122조에서 특수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물의 품질불합격에 의해 타인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제조물의 제조사, 판매자는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손해책임이 운송자, 보관자에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제조사, 판매자는 운송자, 보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 사용자는 품질불합격의 제조물사용에 의해 재산손실, 인신상해를 입은 경우 제조물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

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용하기 구체적인 사안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제품품질법 등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¹⁾

2. 中華人民共和國 消費者權益保護法

이는 후술하는 제품품질법과 더불어 제조물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률로, 1993년 10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회 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구조는 전부 8장 54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제18조 (위험상품의 설명·경고, 결함상품의 고지·결과방지의무 등), 제40조 (사업자의 민사책임), 제41조 (상해를 준 경우의 책임), 제42조 (사망시킨 경우의 책임), 제44조 (재산침해의 경우의 책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²⁾

3. 中華人民共和國 製品品質法

이는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로,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회 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9월 1일에 시행되었고, 그 후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회 회의에서 개정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주요 규정에는 제2조(적용대상), 제4조(제품품질책임), 제40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1조(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사유), 제42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44조(배상책임의 범위), 제45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책임기간), 제46조(결함의 정의), 제47조(품질분쟁의 해결) 등이 있다.

이는 민법통칙에 결여되어 있던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제조자·판매자의 책임규정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였고 이 법에 의해 중국의 제조물책임제도가

1) 謝黎, “中國製造物責任法に關する一考察”, 大阪府立大學 經濟研究 第43卷 第1號, 1997, p.123.

2) 新堀聰, “輸出と製造物責任”, 同志社 商學, 第49卷 第4號, 1998, p.328.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품품질법의 입법배경, 특징,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製品品質法의 立法背景

제품품질법이 성립한 배경에는 중국의 독특한 경제, 사회사정 및 법제도의 전통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는 바, 제품품질법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³⁾

첫째, 조악상품의 범람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중국에서는 위조상품·조악상품의 범람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여 소비자피해의 방지 및 구제는 입법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중국의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탄생을 촉구하게 되었다.

둘째, 법 제도정비의 자연이다. 위조상품·조악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결함제품의 제조사·판매자의 배상책임을 정한 법규정은 민법통칙 제122조 한 조 밖에 없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가 필요하였다.

(2) 製品品質法의 特徵⁴⁾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의 성립배경에는 결함제품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증대라는 각국 공통의 요소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 사회 및 법률사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물책임제도는 선진국의 제조물책임제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입법목적 및 내용의 다원성

중국의 제품품질법 제1조는 “제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품질을 높이고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

3)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一)”,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0號, 1999.12, pp.131~137.

4) 洪庚明, 前揭論文, pp.144~149.

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입법목적의 다원성을 분명히 하였다. 법률의 내용도 제품품질에 대한 행정관리제도와 제조사·판매자의 민사책임제도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에 대하여는 품질검사·감독규정과 제조사·판매자의 제품품질유지의무 등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후자에 대하여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제품의 결함에 의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제조사·판매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밖에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발생한 혼란한 시장경쟁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부정경쟁방지규정도 상당히 도입되었다.

② 혼합입법

중국의 제품품질법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제외국의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부분 외에 제품 품질의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행정책임, 형사책임)도 포함하고 있는 혼합입법이라 할 수 있다.

③ 제품사고의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중국의 경우 공평한 자유경쟁질서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조상품·조작상품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심각하다. 또 위조상품·조작상품의 제조사·판매자의 대부분은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개인경영자이므로 민사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만으로는 피해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에 불충분하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의 현상에 의거하여 중국의 제품품질법은 품질관리의 강화에 의한 제품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④ 결합 판단기준의 이중성

제품품질법 제46조는 “이 법에 있어서 결합이라 함은 제품에 인신, 타인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정도의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품에 대해 인체의 건강 및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증할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결합의 판단요소로서 「불합리한 위험」과 「국가기준, 업계기준」의 2중 기준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 후자의 행정상의 강제기준을 채용한 것은 중국의 결합

정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⑤ 제조자와 판매자의 연대책임

제품품질법 제43조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여 인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의 제조자에 귀속되는 책임을 판매자가 배상하였을 경우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품의 판매자에 귀속되는 책임을 제조자가 배상하였을 경우 제조자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엄격책임의 적용대상은 제조자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매자의 엄격책임이 인정된 것은 미국 및 프랑스 등 소수의 나라이다. 중국에서는 민법통칙 제122조에서 제조자와 판매자의 연대책임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제품품질법 제31조는 이를 재확인하였다.

(3) 製品品質法의 基本構造

제품품질법은 6장 74조로 구성⁵⁾되는 법률로 크게 제품품질의 감독관리에 관한 부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 총칙은 11조로 되어 있으며 본법의 목적, 적용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관리는 14조로 구성되어 품질체계 인증제도, 감독검사제도 등 주로 국가에 의한 품질의 감독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것 이외에 소비자가 품질문제에 대하여 제조사 등에 대한 문의할 권리 및 관계기관에 이의신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제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는 14조로 구성되며 제조자, 판매자가 제품품질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 예를 들면 제조자의 국가기준, 업계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 제조자, 판매자의 표시상의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4장 손해배상은 9조로 되어 있고 결함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5) 신제품품질법이 6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정 전의 제품품질법과 변함이 없지만 구법에 대한 개정은 46군데나 되고 신법의 조문은 전부 74조로 개정전보다 23조의 조문이 늘었다. 于敏, “中國における製造物責任法と消費者保護”, 東京都立大學法學會雑誌, 第43卷 第1號, 2002.7, p.360.

외에 제조자의 무과실책임 및 판매자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제조자·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나아가 배상책임의 범위,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책임기간, 결함의 정의, 품질분쟁의 해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은 제3장과 함께 제조물책임을 규정하는 중심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다.

제5장 별칙은 24조로 되어 있으며 제품의 품질관리 감독책임 및 제조물책임에 대한 행정별칙과 형사별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법의 발효일을 규정한 부칙으로 2조로 구성되어 있다.

III.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책임 내용

1. 製品(또는 製造物)

제품품질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동법 제2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제품(產品)이라 함은 가공·제조를 거쳐 판매에 제공된 제품(產品)을 말하며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건축부재·부품 및 설비에 대해서는 상기에서 정한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품품질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제품품질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동산에 한정하며 서비스, 미가공 농림수산물, 부동산을 제외된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서비스, 미가공 농림수산물, 부동산에도 적용되므로 기업은 이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는 데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수입품 중 제품품질법 제2조의 “製品”的 정의에 해당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제품품질법의 적용대상이다.⁶⁾

이에 대하여 한국의 製造物責任法 제2조에 의하면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차이는 없다.

6) 謝黎, 前揭論文, p.127.

2. 缺陷의 定義

제조물책임에서 제품의 결함은 종래의 과실에 대신하는 기본적인 책임요건으로서 업격책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제조물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한 민법통칙에서는 결함이 아니라 瑕疵에 가까운 「제품의 품질불합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를 초래하였다. 제품품질법 제46조는 결함의 정의에 대하여 “결함이란 제품에 인신, 다른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정도의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품에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의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결함의 판단요소로서 「불합리한 위험」과 「국가기준, 업계기준」의 2종 기준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불합리한 위험」이란 미국법의 「不相當한 위험성」 또는 EU지침의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과 유사한데, 후반부에 행정정상의 강제기준의 채용은 중국의 결함 정의의 큰 특징이다. 중국이 이와 같이 2종 기준을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입법관계자는 “미국법의 인정방법을 참조하면서 중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품 결함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제기준을 도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한편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점은 제품품질법의 정의에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製造物責任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缺陷”이란 당해 제조물에 製造·設計 또는 表示상의 缺陷⁸⁾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⁹⁾고 하고 나아가 缺陷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7)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三)”,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4號, 2000, pp.369~372.

8) 이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결함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責任主體와 原則

제품품질법 제40조는 “(1) 제품이 본래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품 또는 포장에 채용이 명기되어 있는 제품표준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3) 제품의 설명, 실물견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품질상황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품질법 제41조 제1항은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 인해 인신, 또는 결함제품 이외의 기타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 무과실책임원칙(엄격책임)을 취하고 있다. 한편 제품품질법 제42조는 “판매자의 과실에 의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여 인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다. 다만 “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제조자 또는 결함제품의 제품공급자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판매자의 엄격책임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제품품질법 제43조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여 인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의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자에 귀속되는 책임을 판매자가 배상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품의 제조자는 제품의 판매자에 귀속되는 책임을 배상한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상한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그 책임의 귀속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제조자 및 판매자밖에 규정하지 않아 제외국의 제조물책임법에 비해 책임주체의 범위는 매우 좁다.⁹⁾

9) EU지침에서는 책임주체에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자, 표시상의 제조자 및 수리업자 등이 포함되며, 미국에서는 제조자 이외에 소매업자, 도매업자, 임대업자, 수입업자, 부품제조자, 표시상의 제조자 및 수리업자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자 이외에 표시상의 제조업자, 실질적인 제조업자, 수입업자도 포함되고 한국에서는 제조업자 이외에 표시상의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EU지침 등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수입자와 부품제조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¹⁰⁾

한편 중국의 민법통칙 제122조에 의하면 책임주체에는 제조자, 판매자 이외에 창고업자 및 운송업자도 포함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제조자, 판매자를 제1차적 책임주체로 해석하여 창고업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배제하였다.¹¹⁾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5조 2항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가 상품의 결함에 의해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는 판매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책임주체를 생산자, 판매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製造物責任法 제2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者는 (1)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業으로 하는 者,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1)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1)의 者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로 제조자와 수입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조 제2항에서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자 또는 공급한 者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자도 책임주체로 보고 있다.

4. 免責事由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촉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엄격책임이 면제되는 조건, 이른바 면책사유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격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이고 과실책임 또는 계약책임 등 다른 법리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¹²⁾

중국의 제품품질법 제41조 제2항은 “(1) 제품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은 경우, (2)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은 경

10) 東京海上研究所編, 製造物責任法大系 I, 弘文堂, 1998, p.690.

11)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六)”,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8號, 2001, p.522.

12)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七·完)”,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9號, 2001, pp.532~533.

우, (3) 제품을 유통과정에 둘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세 가지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부연설명하면 첫 번째 면책사유는 EU지침 제7조 (a)항에 규정된 것으로 이 면책사유가 적용되는 것은 시험단계에 있는 미완성품과 제품이 도난당해 유통과정에 두어진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이 면책사유가 인정된 다음의 판례가 있다. 첫째, 기술 감정을 위해 보내진 전기보온화(電氣保溫靴)에 결함이 있어 그것을 제멋대로 자택에 가지고 간 감정소의 직원이 사용 중에 感電死한 사건으로 법원은 그 전기보온화가 유통과정에 두어진 상품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둘째, 화장품회사의 종업원이 발매직전의 화장품을 훔쳐 애인에게 선물한 결과 그것을 사용한 그녀가 얼굴 피부에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법원은 제품이 피고에 의해 유통과정에 두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두 번째 면책사유는 EU지침 제7조 (b)항 후반의 “결함이 (제품이 유통과정에 두어진)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중국 제품품질법이 EU지침과 결함의 존재시기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보다도 피해자측에 유리하고 제조사에게 엄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사유가 규정된 것은 재판실무상 결함의 존재시기에 대하여 제품이 유통과정에 둔 때에 존재하고 있다는 추정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면책사유는 EU지침 (e)항을 비롯한 각국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위험의 항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국의 판례실무에서 아직 이러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는 볼 수 없다.¹⁴⁾ 여기서 개발위험의 항변의 기준으로 되는 과학·기술수준에 대하여는 중국 제품품질법은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이론상의 해석과 재판실무상의 운용에 있어서 EU와 일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보아 최고의 과학기술의 지식의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¹⁵⁾

이에 대하여 한국의 製造物責任法 제4조는 면책사유로서 네 항목, 즉, (1) 제조사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조사가 당해 제조물을 공

13) 崔光日, “中國の製造物責任法における歸責原理”, 中央大學大學院 研究年報, 第28號, 1999.2, p.119.

14) 洪庚明, 前揭論文, pp.534~536.

15) 崔光日, 上揭論文, p.120.

급한 때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3) 제조물의 缺陷이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5. 責任期間과 消滅時效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자의 엄격책임을 일정기간내로 제한하는 책임기간은 제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청구권자체를 제한하는 것인데, 중국의 제품품질법 제45조 제2항은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발생시킨 결합제품이 최초의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만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그러나 명시된 안전사용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10년간의 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책임기간의 제한에 대하여는 명시된 안전사용기간의 명시가 없으면 제품이 최초의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¹⁶⁾로부터 만10년을 경과한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또한 책임기간과 동시에 결합제품에 의해 발생한 인신 또는 재산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중국의 민법통칙¹⁷⁾에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인신손해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의 경우와 같이 1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설정되어 있다. 제품품질법 제45조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그 기산은 피해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통칙의

16) 한국법의 경우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중국법과 마찬가지로 인도된 날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법 및 일본법은 책임기간의 예외규정을 두어 蓄積損害와 潛伏損害에 한해 제조물 책임기간의 기산점은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여 손해 발생시부터 책임기간이 기산된다. 중국의 제품질량법에서는 책임기간의 기산시는 「제품이 최초의 소비자에게 인도된 때」로 규정하여 상기蓄積損害와 潛伏損害에는 대응할 수 없다.

17) 중국 민법통칙 제135조, 제136조.

1년간의 단기시효규정을 변경하였다.¹⁸⁾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결합제품에 의한 사고 손해의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년¹⁹⁾ 이내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製造物責任法 제7조는, (1)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第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者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2)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루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損害賠償의 範圍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제품품질법 제40조는 “판매자는 판매한 제품에 ① 제품이 본래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제품 또는 포장에 채용이 명기되어 있는 제품표준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 ③ 제품의 설명, 실물견본 등의 방법으로 표명된 품질상황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리·교환·반품의 책임을 져야 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리·교환·반품·손해배상책임을 한 후에 그것이 제조사, 제품공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제조사, 제품공급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제조자간, 판매자간, 제조자와 판매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도급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약정에 기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제품이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품품질법 제44조 제2항은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가치감소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기타 중대

18) 이는 EU지침의 영향과 민법통칙에 있어서 일반시효기간과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이다. 洪庚明, 前揭論文, p.547.

19) 한국 및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경우는 3년이다.

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손해에 대하여 본법 제44조 제1항은 “가해자는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휴직에 의한 감소한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장해자의 생활보조용품비, 생활보조비, 후유장해배상금과 함께 그 피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서 장례비용, 사망배상금 및 사망자에 의해 생전에 부양받던 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법통칙 제119조²⁰⁾와 구 제품품질법 제32조의 규정²¹⁾보다 배상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²²⁾ 다만 구 제품품질법에서는 엄격책임에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소비자의 피해로 제한되지 않고 사업자의 피해도 포함되었으나²³⁾ 신 제품품질법에서는 세계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의 규정과 같이 소비자 피해로 한정되었다.

한편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는 인체적 상해를 준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손해 배상의 내용은 각각 동법 제41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기 제품품질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나아가 동법 제49조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사기가 있는 경우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거하여 받은 손실에 대하여 증가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증가배상의 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대금 또는 받은 서비스요금의 배로 한다”고 하여 정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종래 중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정되었지만 본법에서 중국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²⁴⁾

20) 민법통칙 제119조는 “公民의 신체를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결근에 의한 감소한 수입, 후유장해자의 생활보조비 등의 비용을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피해자를 사망시킨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서 장례비용, 피해자에 의해 생전에 부양받던 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구 제품품질법 제32조는 결합제품에 의한 인신손해의 배상범위에 대하여 민법통칙 제119조의 규정을 거의 답습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상항목에 조의금의 배상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22) 구 제품품질법에서는 사망배상금 및 후유장해배상금의 규정은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상항목에 조의금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사망배상금으로 해석하고 있고 제조물책임의 판례실무에서도 사망배상금 및 후유장해배상금이 인정되고 있다. 신 제품품질법에 사망배상금 및 후유장해배상금이 인정된 것은 이러한 판례실무의 성과를 긍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五)”,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7號, 2001.3, p.391.

23) 구 제품품질법 제28조 및 제33조 참조.

24) 東京海上研究所編, 前掲書, pp.697~698.

이에 대하여 한국의 製造物責任法 제3조에 의하면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者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조물 책임의 배상범위는 생명·신체손해와 결함제품이외의 재산손해이다

IV. 제조물책임 사례연구

1. 카셋트식 풍로 폭발사고 (北京市 海淀區人民法院判決)25)

본건은 중국에서 제품품질법 및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시행된 후에 이들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물책임이 인정된 사례이다.

19세의 여자학생인 X는 1995년 3월 8일 가족들과 식당Y3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카셋트식 풍로의 봄베가 폭발하여 얼굴과 양손에 홍터를 남기는 화상을 입고 카셋트식 봄베의 제조자인 Y1, 카셋트식 풍로의 제조자인 Y2, 식당Y3의 세 명을 피고로 하여 치료비, 일부 노동력 상실에 의한 장래의 생활보상비, 정신적 피해의 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Y1은 풍로에서의 가스 누출이 사고 원인이며 본건 사고는 카셋트식 봄베의 품질 및 여기에 채운 가스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Y2는 반대로 카셋트식 풍로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고, Y1이 카셋트식 봄베에 채운 가스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Y3는 X의 상해는 카셋트식 풍로와 봄베의 품질에 기인한 것이고 Y3가 제공한 서비스에는 과실이 없어 배상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법원은 국가기술 감독국 전문 감정반의 감정에 의거하여 카셋트식 봄베의 폭발은 봄베에 채운 가스의 성분, 내압이 봄베의 강도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봄베의 영어와 중국어의 주의문구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Y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Y1과 Y2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사례는 손해에 대하여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明言하여 X의 상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로 10万元을 용인한 점에

25) 村上幸隆, “中國の製造物責任の留意点”, 日中經協ジャーナル, 2003.11, pp.12~13.

서도 주목받는 재판례이다.

2. 자동차 에어백 미작동에 의한 상해 (北京市 海淀區人民法院判決)26)

이 사례는 일본기업이 연루된 제조물책임 소송의 대표적인 예이다.

X가 Y사 제조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 돌로 만든 벽에 추돌한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Y는 본건 승용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고 미국의 기준에 적합한 것, 중국의 차량기준에는 에어백의 설치가 강제되어 있지 않아 본건 승용차는 중국의 차량기준에 적합하고 결함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판결은 X는 에어백 장치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Y는 X에게 보다 고도의 안전보유의무를 진다면서 X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보다 엄격한 자국 또는 중국 국외에서의 표시품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고 판결내용 자체로는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서도 외자기업에 대하여는 중국기업에 대한 요구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문제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위험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3. 자동차 전면유리파열에 의한 사망사고 (北京市第二中級人民法院判決)27)

본건은 피고인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가 소송에서의 입증활동, 증거 취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례이다.

A가 Y사가 만든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주행 중 갑자기 전면 유리가 폭발·파열하여 사망, 사망원인은 ‘爆震에 의한 負傷死’로 판단되었다. A의 처와 아들(X)은 Y사의 북경지점에 전면 유리의 결함에 의한 사망사건으로서 1999년 5월 총액 30万元 (나중에 50万元으로 증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1999년 11월 16일 피고에 과실이 있다는 증명이 없고 또한 피고의 행

26) 上揭論文, p.13.

27) 前揭論文, p.14.

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청구의 법률상 근거도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X가 상소하였다.

2000년 8월 10일 2심의 북경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Y에게 합계 49万6,901元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건의 쟁점은 전면 유리의 갑작스러운 폭발·파열이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이었다.

Y는 전면 유리의 제조사가 작성한 감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제2심 법원은 동 제조사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하는 법정 감정기관이 아니고 동사와 감정 결과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신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는 2심인 북경시 중급 인민법원이 “유일한 증거인 전면 유리를 Y가 봉인 약속을 깨고 일본에 가지고 가 전면 유리가 일본에서 중국에 반환된 때에는 이미 실험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법정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제2심법원은 이에 따른 입증불능의 패소책임은 Y에 있다고 하여 X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중국의 인민법원에의 소송시 감정 등의 입증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소송수속 중 적절치 못한 취급방법으로 인해 일본기업이 패소한 것은 주의해야 할 점이다.

4. 맥주병의 폭발에 의한 傷害 (上海市南市區人民法院판결)²⁸⁾

이 사례는 제품품질법이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동법이 시행된 뒤에 제소되어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원고 姚裕堂은 1993년 8월20일 꾀고 상해맥주 유한회사가 생산한 “상해”라는 맥주 5병을 구입하였다. 다음날 오전 9시경 원고가 비 때문에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옷장 옆의 있던 맥주병 중 하나가 갑자기 폭발하여 유리 조각이 홀날려 원고는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웃사람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꾀고는 원고 친척으로부터 연락을

28) 본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내용은 중국고급재판관양성센터·중국인민대학법학원 편, “中國審判判例要覽”, 중국인민대학법학원출판사, 1994, pp.807~809, 謝黎, 前揭論文, pp.133~135 채인용.

받고 직원을 파견하여 병 조각을 수집하게 하였다. 쌍방이 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였지만 합의에 달하지 못하여 원고는 제소하였다.

피고는 맥주병은 다른 공장이 국가 기준(GB4544-84)에 의해 제조된 것이고, 맥주는 저온살균법에 의해 살균한 후 맥주병에 주입한 제품인 것, 원고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 폭발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래 책임은 없지만 인도적인 견지에서 원고에게 1,500元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은 맥주병의 폭발에 의해 부상을 당하여 부상회복까지 지출한 의료비, 교통비, 시중 간호비, 영양비 및 휴업에 의한 감소한 수입, 간병을 위한 친척의 휴업감소수입 등 합계 08,325.50元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上海市南市區人民法院은 동년 12월18일 민법통칙 제119조, 제122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료비, 교통비, 시중 간호비, 영양비, 휴업에 의한 감소한 수입, 간병을 위한 친척의 휴업감소수입 등 합계 4,000元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 총액 347元 중 170元을 부담할 것, 잔액 177元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본판결은 원고의 부상이 맥주병의 폭발에 의한 것인 것, 원고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 피고측은 합격품이라는 감정결과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합격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판결을 내림에 있어 무과실책임원칙과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원칙을 취하는 제조물책임의 법리 및 제품품질법의 규정도 고려한 것이다.

5. 가스化 곤로의 폭발, 炎上에 의한 인신사고 (上海市人民法院判決)²⁹⁾

본 건은 제품품질법이 시행된 뒤에 발생한 사건으로 원고A외 2인은 D시에 있는 B상점에서 가스화 곤로를 구입하여 요리하던 중 곤로가 갑자기 폭발하여 원고들이 화상을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문제의 곤로는 C공장이 생산한 것으로 D시에 있는 B상점과 E제조회사가 공동판매한 것이었다. 사고원인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곤로의 설계와 제조는 국

29) 본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내용은 周水森編, “新類型民事判例分析”, 華東理科大學出版社, 1995, pp.110~114, 謝黎, 前揭論文, pp.133~136 재인용.

가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수압용기의 용접이 나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上海市人民法院은 조정을 시도했지만 원고와 피고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제품품질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B상점과 E제조회사는 재판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의료비, 시중 간호비, 영양비, 휴업에 의한 감소한 수입, 정형수술비 등 합계 7万9,364.15元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과 감정비용은 피고양자가 공동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6. 제품품질에 대한 클레임 사건 (上海市高級人民法院판결)³⁰⁾

1994년 3월 7일 원고 상해A연합공사는 피고 상해B공사가 글리세린을 공급하는 것을 알고 구입을 희망하는 C건재공사의 종업원과 B공사의 종업원을 수반하여 창고에 글리세린을 보려 갔다. 같은 날 B는 샘플을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글리세린의 함유량이 96.8%라는 품질검사보고서를 발행받았다. 그래서 A는 B로부터 11万3,000元으로 글리세린을 구입하여 그것을 12万5,000元에 C에게 판매하였다.

동년 4월 桂林市技術監督監察大隊는 이 글리세린을 검사 의뢰한 결과 함유량이 10.8%밖에 없고 환원성물질 중에 ‘銀鏡’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글리세린에는 생산공장의 명칭, 소재지, 생산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상표와 검사합격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다 품질도 국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조악품이라는 이유로 공급자측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上海市高級人民法院은 본건의 원고A와 피고B 쌍방 모두 국가기준에 규정된 표시가 글리세린 포장에 없는 것을 알면서 구두로 계약을 한 것이므로 당해계약은 무효인 것을 인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B가 법정검사자격이 없는 곳에서 발행한 품질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국가기준에 미달된 상품을 A에 판매한 것은 B의 과실이고 B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하므로 B는 A에게 대금을 반환하고 A의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② A는 구입시 상품검수를 게을리 하여 국가기준에 미달된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A가 종된

30) 본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내용은 李國光·傅長祿·李家祥責任編著, 上海市高級人民法院編, “上海法院最新判例精選”, 上海人民出版社, 1996, pp.134~137, 謝黎, 前揭論文, pp.138~139 채인용.

책임을 져야 하므로 A의 손실의 일부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법원은 제품품질법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40조 제2항 및 경제계약법에 의거하여 A가 B에게 글리세린을 반품하고, B가 A에게 대금 11万3,000元을 반환함과 함께 4万 5,273.6元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V. 결론

지금까지 한국 수출업자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중국법인이 제조·가공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는지 아닌지, 제조물책임을 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제조자 등은 언제까지 엄격책임을 지는 것인지 등등에 관한 제문제를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의 규정 중 특히 제품품질법을 중심으로 적용대상인 제품(또는 제조물), 결합의 정의, 책임주체와 원칙, 면책사유, 책임기간과 소멸시효,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 수출업자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중국법인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품품질법과 관련하여 중국 제품품질법은 결합판단의 2종 기준의 채용, 결합제품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서의 선택권, 사고시의 결합의 존재에서 제품을 유통과정에 들 때에 결합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두 번째의 면책사유) 등에 의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경감 및 구제의 원활한 실현을 피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제조물책임 문제 발생시 중국 소비자인 피해자측에 유리하여 가해자로 될 수 있는 한국 수출업자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중국법인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선 결합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만전의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조물책임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 제조물책임법제도의 운용의 실체를 살펴 볼 수 있었고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주의를 요하는 다음의 결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품의 주의문구에서 영어와 중국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 둘째, 책임유무의 판단결정시 중국 자국의 엄격한 기준 또는 보다 높은 수준인 global

standard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소송 수속 중 증거취급방법이 적절해야 한다는 점 넷째, 무과실책임원칙의 적용과 입증책임이 피고로 전가된다는 점 다섯째, 제품의 설계와 제조는 국가가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여섯째, 제품품질에 대하여 국가기준에 달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덧붙여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경고표시의 작성시 중국이 다민족국가이고 또 문 맹자가 있으므로 한자표시만 아니라 중국어 이외의 표시와 그림 표시도 고려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부품이나 원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및 검사체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상기 중국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사례의 분석을 통해 이를 잘 연구 함으로써 한국 수출업자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중국법인이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 제조물책임 관련 법규상 제조물책임과 사례연구를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나 관련 사례 중 한국 기업과 직접 관련된 사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參考文獻

- 崔光日, “中國の製造物責任法における歸責原理”, 中央大學大學院 研究年報, 第28號, 1999.2.
- 許宰暢, “韓·中·日 製造物責任法의 比較”, 產業經濟研究, 第13卷 第6號(下), 2000.11.
- _____, “한국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國際商學, 第17卷 第3號, 韓國國際商學會, 2002.12.
- 奥島孝康·堀龍兒, 「國際法務戰略」, 早稻田大學出版部, 2000.2.
- 于敏, “中國における製造物責任法と消費者保護”, 東京都立大學法學會雜誌, 第43卷 第1號, 2002.7.
- 小林秀之, 新版製造物責任法, 中央經濟社, 1995.
- 謝黎, “中國製造物責任法に関する一考察”, 大阪府立大學 經濟研究, 第43卷 第1號, 1997.12.
- 新堀聰, “輸出と製造物責任”, 同志社 商學, 第49卷 第4號, 1998.
- 東京海上研究所編, 製造物責任法大系 I, 弘文堂, 1998.
- _____, 製造物責任法大系 II, 弘文堂, 1998.
- 村上幸隆, ‘中國の製造物責任の留意点’, 日中經協ジャーナル, 2003.11.
- 山口正久 譯, 美國第3次不法行爲法リストメント 製造物責任法, 木鐸社, 2001.
-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一)”,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0號, 1999.12.
-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二)”,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1號, 2000.3.
-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三)”,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4號, 2000.9.
-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四)”,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5號, 2000.12.
-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五)”,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7號, 2001.3.
-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六)”,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8號, 2001.6.
- 洪庚明, “中國製造物責任の研究(七·完)”,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189號, 2001.9.
- 韓國 製造物責任法
- 日本 製造物責任法
- 中華人民共和國 製品品質法
- 中華人民共和國 消費者權益保護法
- 製造物責任에 관한 EU指針

Restatement of the Law (3rd): Torts: Product Liability, 1998.

<http://stat.kita.net>

<http://www.smba.go.kr>

<http://www.kplc.or.kr/>

http://www.plkorea.com/kfsbpl/KB/KB_index.asp

ABSTRACT

The Product Liability Laws and Regulations of China and Case Study on Product Liability

Huh, Jae Chang · Han, Nak Hyun

Product liability is becoming a real issue to exporters, manufacturers world 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duct liability of Korean exporters, manufacturers, etc. under Product Liability Laws and Regulations of China.

For this purpose, firstly we deal with the Product Liability Laws and Regulations of China. Secondly we analyze the case study concerning the Product Liability in China.

From the analysis of case study, Korean exporters, manufacturers, etc. are requir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ollowing : the correspondence of English with Chinese in the warning phrase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strict global standard in case of existence of product liability, the proper treatment of evidence in the process of litigation, the application of strict liability and the shift of responsibility for evidence on to a defendant, the observance of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country in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product, the manufacture of product to come up to country standard in quality, the consideration of diverse expression in the preparation of warning sign, the importance of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system in case of local procurement of parts and raw materials,

Finally, this paper contributes to help the Korean Exporters, Manufacturers, etc. to build up the proper countermeasures regarding product liabilit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regulations of China.

Key Words :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Laws and Regulations,
manufacturer